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5/전송(02)790-658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팀원 조시형[6575]/E-mail 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229호

시행일자 2023. 12. 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의사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제2023-230호)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30호(2023. 11. 30) "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"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동 사항을 회원들께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주요내용

-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관련

*붙임 :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(복지부 제2023-230호) 1부.
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